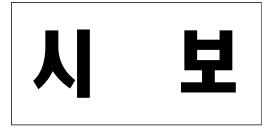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14	기관의 장
선	
람	

제 78호

2015. 8. 12(宁)

공 고

0	남원시	공고	제 2015	- 976	호 남원/	시 식품	푺접객업	시설기준	적용	특례에	관한	규칙안	입법예고	1
\bigcirc	난워시	곳 고	제2015-	969호	- 도로명	부여	및 벼겻	(아) 곳고.						10

회					
람					
"					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공고 제 2015 - 976호

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11일

남 원 시



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(안)

1. 제정이유

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제8호가목 중 "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"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의견제출할 곳 :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631-5931), 직접방문, 인터넷 등

4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담당자 서유미(전화 620-79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5. 8. . 제 출 자: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: 보건지원과장

1. 제정이유

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과 옥외영업장 적용대상 및 각각의 시설기 준 규정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나. 특례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(안 제5조)
- 다. 옥외영업시간의 제한과 옥외영업자의 책무 규정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라. 식품위생법 준용 규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식품위생법」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전시산업발전법」, 「관광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. 입법예고
 - 기 간: 2015. 8. 12. ~ 2015. 9. 2.(21일)
 - 결 과:
- 2).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- 3)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제8호가목 중 "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"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식품접객업"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, 나목의 일반음식점,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2. "옥외영업"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.
- 제3조(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) ①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.
 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
 - 2.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
 - 3. 고속도로·자동차전용도로·공원·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
 - 4.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
 - 5.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·수·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

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·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(다만,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.)

- 6. 「전시산업발전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
- 제4조(옥외영업장 적용대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.
 - 1. 「관광진흥법」제70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"지사"라 한다)가 지정한 관광특구
 - 2. 「관광진흥법」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
 - 3. 지사 또는 시장이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.
- **제5조**(적용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.
 - 1.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. 다만,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예외로 한다.
 - 2.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3.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6조(영업시간의 제한)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7조(옥외영업자의 책무)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.

- 2.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,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3.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식품위생법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

[별표 1]

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시설기준(제3조 관련)

1. 영업장은 외부의 환경이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구조여야 하며, 미관상 해가 없는 청결한 구조여야 한다.

2. 조리장

- 가.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,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·세척시설·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, 폐기물용기는 오물·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
- 다.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(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)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·소독 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라.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마.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한다.
- 3.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4. 화장실

- 가.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·터미널·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,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나.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[별표 2]

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(제4조 관련)

- 1.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, 영업장 내에서 조리·가공 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3.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, 파라솔, 식탁,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.
- 4. 상기 규정된 시설물 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「건축법」, 「도로법」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시

남원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

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 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- 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(작성대상)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시

				의	견	제	출	서			
1.	의견제출	는 목록	루	남원시 의견제		객업	시설기	준 적용	- 특례에	관한	규칙(안)
2	제출자	성명(명칭)									
۷.	세물사	주	소								
3.	의 견]									
4.	기 티	ŀ							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8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15- 969호

도로명 부여 및 변경(안)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 제3항, 제7조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『도로명 부여 및 변경(안)』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일

남 원 시 장

- 1. 공고기간 : 2015. 8. 14 ~ 8. 27(14일)
- 2. 공고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, 게시판
- 3. 공고내용 : 도로명 부여 및 변경(안) : "붙임" 참조
- 4. 의견제출 : 2015. 8. 28일까지(남원시청 민원과)
 - 서면 제출(별첨 서식)
- 4.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 변경절차

도로구간 및 도 변경 신청	로명	신청을 받은 날부터	주민 의견 수렴 공고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		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
주소사용자의 5분의	비1 신청 -	⇒ 10일 이내	⇒ 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		도로명	주소위원회 개최	⇒ 10일 이내
공고 및		서면 동의	의를 받은 경우	동의 얻은 등	날로부터 : ㅍ하 \	고시 및 신	청인 통보
신청인 통보	공고한 날부터 ⇒	주소사용지	다의 5분의1 신청	(84 87 > 10일 0		변경사항 및	변경기준일
. 심의 결과	30일 이내	서면 동의	를 못 받은 경우		일부터	공고 및 신	청인 통보
. 내용 및 절차	ापा	주소사용	자의 1/2 이하	⇒ 10일 0	내	결과	통보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공간정보담당(☎620-6136~6139)으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시 홈페이지(www.nawon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부여(안) 및 도면

일련	도로	예비	도로	도로폭	도로	구간	기초	중심	관할			
번호	위계	 도로명	길이 (m) (m) 시점 종점 간격 선 행정구역 부여사유		부여사유	도로명의 결정절차						
1	길	왕벗길	720	3	도면참 조	도면참 조	20	도면 참조	보절면	진입로 변 왕벗나무 식재 및 주소사용자 요청	의견수렴(14일) → 도로명주소위원회	
2	길	관음사길	840	4	도면참 조	도면참 조	20	도면 참조	보절면	관음사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개설	심의 → 고시(효력 발생)	

도로명 부여 및 변경(안)

도로명 부여

제78호

심의번호 - 1

	구 분	내 용	사유
	예비도로명	왕벗길	
	시 작 점	보절면 괴양리 837-8 (도면참조)	
개요	끝 지 점	보절면 괴양리 27 (도면참조)	
	연 장 / 폭	720m / 3m	
	중 심 선	도면 참조	

현황도 (신규:왕벗길)



진입로 변 왕벗나무 식재 및 주소사용자 요청

도로명 부여 및 변경(안)

도로명 부여

제78호

심의번호 - 2

	구 분	내 용	사유
	예비도로명	관음사길	
	시 작 점	보절면 서치리 668-1 (도면참조)	
개요	끝 지 점	보절면 서치리 664-1 (도면참조)	
	연 장 / 폭	840m / 3m	
	중 심 선	도면 참조	

현황도 (신규:관음사길)



관음사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개설

도로명 변경(안) 및 도면

		현재		변경 도로명								
일련 번호	도로명	시점	종점	길이 (m)	폭 (m)	예비도로명	시점	종점	길이 (m)	폭 (m)	기초 간격 (m)	변경사유
1	남창윗길	수지남창 1857-25	수지남창 887-2	429	4	남창태동길	수지남창 1857-25	수지남창 887-2	429	4	20	"태동"이란 지병 반영
2	광치농공1길	광치동 781-133	광치동 195-12	285	15	광치산업1길	광치동 781-133	광치동 195-12	285	15	20	농공단지 명칭에 맞게 변경
3	광치농공2길	용정동 753-206	광치동 781-1	1016	6	광치산업2길	용정동 753-206	광치동 781-1	1016	6	20	농공단지 명칭에 맞게 변경

2015. 8. 12(수)

도로명 변경(안)

도로명 변경

심의번호 - 1

구 분	기 존	변 경 (안)	비고
도도로명	남창윗길	남창태동길	
로 시작점	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875-25 (도면참조)	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875-25 (도면참조)	
│ │끝 지 점 │	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887-2 (도면참조)	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887-2 (도면참조)	
[년경/도	429m / 4m	429m / 4m	
황중심선	도면참조	도면참조	
현황도 (변경:남창윗길 →남창태동길)	남창왕길 보전지로, 남창길 보전지로, 남창길 나장복지회관	남창태동길 용가길 보건진로 남창길 보건지로 남창길	
사 유	예부터 불러온 태동	등이란 지명을 반영	

2015. 8. 12(수)

도로명 변경(안)

도로명 변경

심의번호 - 2

			·	-
	구 분	기 존	변 경 (안)	비고
도	. 도로명	광치농공1길	광치산업1길	
로	시 작 점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-133 (도면참조)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-133 (도면참조)	
	끝 지 점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195-12 (도면참조)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195-12 (도면참조)	
현	연장/폭	285m / 15m	285m / 15m	
황		도면참조	도면참조	
	현황도 변 경 }치농공1길→ } }치산업1길) 사 유	광석길 광치농공2길 광치농공2길 왕지동공2기 명칭 변경이	광석길 광치농공2길 광기농공2길 막게 도로명 변경	
L				

2015. 8. 12(수)

도로명 변경(안)

도로명 변경

심의번호 - 3

구 분	기 존	변 경 (안)	비고
도도로명	광치농공2길	광치산업2길	
로 시작점	남원시 남원시 용정동 753-206 (도면참조)	남원시 남원시 용정동 753-206 (도면참조)	
│ │ 끝 지 점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-1 (도면참조)	남원시 남원시 광치동 781-1 (도면참조)	
현 연장/폭	1016m / 6m	1016m / 6m	
황중심선	도면참조	도면참조	
현황도 변 경 (광치농공2길→ 광치산업2길)	광치농공2길 (공청산왕전제) (무실산자 150m)	장석길 광서길 광지사업2길 왕지사업2길 발표되 달라지 150m	
사 유	농공단지 명칭 변경이	게 맞게 도로명 변경	

제78호

도로명등[안] 의견서

대상 도로명	구분()	연번()	해당도로명()
의견내용:						
의견제출자		생년월	일		연락처	
주소(사업장)						